

ESG위원회 규정

사규번호	규정 2022 - 1
담당팀	기획팀
제정일자	2022.03.18
개정일자	2022.03.18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태영건설 (이하 “회사” 라 한다)의 정관 제38조 2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이사회 내 ESG 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, 역할, 운영,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역할 및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ESG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회사의 중장기 ESG 전략, 주주권익보호, 독점거래, 공정거래, 윤리경영, 사회적 가치 창출, 기회변화 대응, 안전·보건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1항의 사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4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 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
제 6 조 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신규 위원이 충원된 경우,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충원된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제 7 조 (위원회의 소집)

- ① 정기 위원회는 3월, 8월, 10월에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

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-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안건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문서, 전자문서, 구두, 기타 발송 등을 통하여 참석자에 사전 배포한다.
- ④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수시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8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여 및 결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9 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.
 - 1. ESG 전략수립
 - 1) ESG 경영전략
 - 2) 기후변화 대응방안, 환경보호 계획, 친환경 기술
 - 3) 조직별 ESG 목표
 - 4) ESG 관련 조직개편
 - 2. 주요 ESG 활동 보고
 - 1) 대외 ESG 평가
 - 2) 온실가스, 수자원, 폐기물 사용량 관리
 - 3) 친환경 공급망 관리
 - 4) 언론홍보
 - 3. 사회공헌
 - 1) 사회공헌정책 수립
 - 2) 후원금 및 기부금 지급
 - 3) 사회공헌활동 결과
 - 4. 안전경영
 - 1) 안전보건정책 및 방침
 - 2) 안전보건위원회 활동내역
 - 5. 임직원 및 상생
 - 1) 공정거래, 독점거래, 부패방지 프로그램
 - 2) 윤리경영, 인권경영
 - 6.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
 - 7. 기타 비재무적 주요 경영현황 검토 및 승인
 - 8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이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

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)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유관부서 협조 또는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의사록 및 회의록)

- ①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심의·논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,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한다.

제 12 조 (간 사)

- ①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운영 및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3 조 (규정의 개정)

-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른다.

제 14 조 (부 칙)

- ① 이 규정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